

# 보도자료



보도일	2014. 9. 18(목)		
배포일	2014. 9. 18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5054, 9072)
담당부서	기획처 회계지원팀	문의	기획처 회계지원팀(880-2437)

## '서울대 법인화 적자 숨기려 발전기금 등 466억 돌려막기' 보도에 대한 해명

□ 2014년 9월 18일(목) 일부 언론이 보도한 “서울대, 법인화 적자 숨기려 발전기금 등 466억 돌려막기”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.

### □ 주요 보도 내용

- 법인화 전환 이후 적자를 가리기 위해 발전기금 등 타회계 전입금을 가져다 ‘짜맞추기’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전용한 타회계 전입금이 법인화 전환 이후 3년간 약 466억원에 달한다.

### □ 해명 내용

- 서울대학교의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은 국가출연금, 등록금, 타회계 전입금(발전기금, 산학협력단 간접비) 등 3가지 주요재원으로 편성된다. 이러한 예산 편성은 국립대학법인 전환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시행해온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다. 타회계 전입금도 법인 설립 이전부터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던 재원이다.
- 타회계 전입금은 전입과 사용에 대한 근거가 관련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교육, 연구, 장학, 시설 등 정해진 용도로만 전입이 가능하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적자를 가리기 위해 ‘짜맞추기’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.

- 일반적으로 적자예산 편성이란 외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. 2012년에는 외부 차입금 조달을 피하고 각 기관의 예산감축 등 다양한 절감 노력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였다.

[첨부] 타회계 전입금 근거

-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정관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,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,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
1.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
3. 학생의 장학 사업
3. 후생복지시설의 확충(이하생략)

-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

제4조(업무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3.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

제26조(지출)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3.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